

제 342 호

1973. 1. 27.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 
편집 : 공보실장 김진호  
전화 75-7834  
인쇄 :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 
전화 75-6444. 6090

# 시보

차 례

◎ 규 칙	서울특별시중기관리사업소직제중개정규칙 ..... 3
제 1285 호	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직제중개정규칙 ..... 3
제 1286 호	
◎ 고 시	
제 14 호	도시계획소로변경 ( 폐지 ) ..... 6
제 15 호	하천점용 및 공작물설치허가 ..... 7
제 16 호	서울특별시지방문화재지정 ..... 8
◎ 공 고	
제 9 호	도시계획용도지역일부변경및 중앙도매시장 시설결정 ..... 8
제 10 호	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시행허가 명의변경 ..... 10
제 11 호	지하고속철도제 1 호선 부대시설변경 ..... 11
◎ 사 령	..... 12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## 서울특별시

규 칙

서울특별시시장 양 택 식

1973년 1월 26일

서울특별시중기관리사업소직제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시장 양 택 식

1973년 1월 26일

◎ 서울특별시규칙 제 1285 호

서울특별시중기관리사업소 직제중 개정규칙

서울특별시중기관리사업소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4 조 제 1 항중 "운영계와 정비계" 를 "운영계, 정비계와 검사계" 로 하고 "정비계장" 을 "정비계장과 검사계장" 으로 하며 제 2 항 제 3 호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검 사 계

- 가. 중기의 신규등록검사
  - 나. 계속검사, 계속검사연기
  - 다. 구조변경검사, 임시검사
  - 라. 기타 중기검사에 관한 사항
-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직제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◎ 서울특별시규칙 제 1286 호

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 직제중개정규칙

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 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5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5 조 ( 관리과 ) ① 관리과에 서무계, 기획계, 경리계, 운영계와 조달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.

② 관리과의 계별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서 무 계

- 가. 문서, 관인 및 기밀
- 나. 인사, 복무, 급여, 후생 및 교육
- 다. 청중용품의 구매발주 수급보관 관리

라. 차량 및 비품관리

마. 회의의식

바. 타과계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

2. 기 획 계

가. 지하철건설의 종합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조정

나. 연도 기본운영계획 및 동시

행계획

- 다. 예산 및 기채 (국내)
- 라. 자금계획 및 자금조달
- 마. 차원에 관한 사항

3. 경리계

- 가. 출납의 총괄 및 결산
- 나. 회계심사 및 물품검수와 공사  
검사입회

- 다. 지출원인 행위부의 정리
- 라. 건설용지 기타의 매입처분 및  
보상

- 마. 건설용지 건물의 관리소송 및  
등기

- 바. 고정자산회계
- 사. 금고에 관한 사항

4. 운영계

- 가. 수송계획 및 운수수입 책정에  
관한 사항

- 나. 역운영 및 영업지도

- 다. 승차권류, 운수장 표류제정

- 라. 운임요금 및 영업제도에 관한  
사항

- 마. 지하철 부대 사업운영에 관한  
사항

- 바. 영업선전에 관한 사항

- 사. 운수영업인허가 신청에 관한  
사항

- 아. 영업설비 및 용품에 관한 계

획과 운용

- 자. 영업사고조사처리 및 손해배상  
에 관한 사항

- 차. 승차권 위탁판매

- 카. 유실물보관 및 처리

- 타. 영업설비 용품의 수급보관관리

5. 조달계

- 가. 공사용 물품수급 및 관리계획

- 나. 공사용 물품의 출납 및 보관  
에 관한 사항

- 다. 계약에 관한 사항

- 라. 수입 외자재의 구매 조작 및  
사후관리

- 마. 공사용 물품관리 규정 및 조  
준규격의 제정과 운용에 관한  
사항

- 바. 공사용 물품의 재고 문제 소비  
기준 및 손, 당실의 처리

- 사. 입세출의 금과유가증권 출납  
보관

제 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6 조 ( 계획조사과 ) ① 계획조사과에  
조사계, 설계계, 건축계와 보선계를  
두고 건축계장은 지방건축기과로  
기타 계장은 지방토목기과로 보한  
다.

② 계획조사과의 계별분장사무는 다  
음 각호와 같다.

1. 조 사 계

가. 지하철 건설에 따른 기본조사  
와 계획

나. 건설규정 및 기준의 제정과  
조정

다. 노선 정차장 및 궤도의 계획  
과 조정

라. 부대 공작물과 특수시설의 계  
획수립

마. 과내 타계 주관에 속하지 아  
니하는 사항

2. 설 계 계

가. 토목설계의 종합조정

나. 토목 설계기준 시방 및 품셈  
의 제정과 조정

다. 토목설계의 표준화

라. 토목공사의 발주

마. 도표류의 정비

바. 교행 제작 감독

사. 토목공사용 재료의 규격제정

아. 지하철 구축물의 설계용역의  
발주

자. 지하철 구축물의 설계

차. 지하개발공사 및 기타 특수지  
설의 설계

카. 공법의 개발

3. 건 축 계

가. 지하철 정차장 내부 및 부대

건축물의 계획, 설계공사 발주  
시공감독

나. 위생, 급수, 병난방기타 설비  
의 시설에 관한 계획, 설계,  
시공 감독

4. 보 선 계

가. 궤도의 건설계획 및 구조계  
획에 관한 사항

나. 궤도의 제시방 및 설계재료  
의 제작감독, 현장 시공감독

다. 궤도 보수 계획에 관한 사항

제 8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8 조 (공작전기과) ①공작전기과에  
전무계, 전력계, 신호계, 통신계와  
차량기계계를 두고 전무계장, 전력  
계장과신호계장은 지방전기과로,  
통신계장은 지방통신과 또는 지  
방전기과로, 차량기계계장은 지  
방기계과로 보한다.

②공작전기과의 계별분장사무는 다  
음 각호와 같다.

1. 전 무 계

가. 과내 업무의 종합계획 및  
조정

나. 공사유관업무

다. 전기관계 해외 용역에 관한  
사항

라. 변전소시설의 계획설계 및

시공감독	부 칙
<p>마. 과내 타게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</p>	<p>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</p>
<p>2. 전력계 가. 수전, 급전 및 조명시설의 계획, 설계, 시공감독</p>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width: 100px; height: 40px; margin: 0 auto; text-align: center;"> <p>고 시</p> </div>
<p>나. 전차 선로의 계획, 설계, 시공감독 다. 건설공사의 전기관계 대외 처리에 관한 사항</p>	<p>◎ 서울특별시고시 제 14 호 도시계획소로변경 ( 폐지 )</p>
<p>라. 소관 전기시설 공사의 발주 3. 신호계 가. 지상 및 차상신호 설비의 계획, 설계, 시공감독</p>	<p>1. 당시 관내 도시계획소로를 도시계획법 제 12 조, 제 13 조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 제 1 항 제 1 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( 폐지 ) 한다 .</p>
<p>나. 소관신호시설 공사의 발주 4. 통신계 가. 유선, 무선통신시설의 계획 설계 시공감독</p>	<p>2.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및 시민봉사실과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.</p>
<p>나. 소관통신시설 공사의 발주 다. 건설 공사의 통신관계 대외 처리에 관한 사항 5. 차량기계계 가. 차량설계에 관한 계획 및 기준설정 나. 동력차량설계와 기관부 설계 다. 공작장 설비의 계획 및 기준설정</p>	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73. 1. 24. 서울특별시장</p>

3. 노 선 조 서								
구분	등급	류별	번호	폭원	연 장	기 점	종 점	비 고
기정	소로	2		8	354	정동 5-6	정동 1 - 3	
변경	"	2		8	354	"	"	폐 지

별첨 : 도면참조 (도면은 시청도시계획과 및 시민봉사실과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보관)

◎ 서울 특별시 고시 제 15 호

하천점용 및 공작물 설치 허가

하천점용 및 공작물 설치를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으므로 하천법 시행령 제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 한다.

1973.1.24

서울 특별시 장

1. 허가년월일 : 1973. 1. 24.
2. 허가위치 :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봉동 1의 10-90의 2
3. 공정 및 수량 : 유사벽설치 1 개소  
(연장 90 m)  
제방옹벽설치 2 개소

(연장 340 m)

돌망태설치 1 개소

배수문설치 2 개소

4. 점용면적 : 공작물설치면적  
12,562. m<sup>2</sup>
5. 목 적 : 군 방벽선 보호 및 토사채취
6. 수 허가자 주소, 성명 :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1가 170 육영재단 어깨동무 서울지사 지사장 이 재 운

<p>◎ 서울특별시고시제 16 호</p> <p>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 지정</p> <p>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보호조례 제</p>	<p>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를 지정하고 동조례 제 8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</p>
---	--

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 지정 목록

지정번호	종 별	문 화 재 명	소 재 지	지정년월일
제 16 호	사 적	설 농 당	동대문구용두동 138	73. 1. 17
제 17 호	천연기념물	잠실리 뽕나무	영등포구잠원동	"
제 18 호	"	화양동 느티나무	성동구 화양동	"
제 19 호	민 속 자 료	서빙고 부군당	용산구서빙고동 176	"
제 20 호	"	평창동보현산신각	서대문구평창동	"
제 21 호	"	인왕산선바위	서대문구인왕산봉	"

1973. 1. 26

서울특별시 장

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9 호

도시계획용도지역일부변경및  
증양도매시장 시설 결정

1. 서울 도시계획 용도지역 일부 변경과 증양도매시장 시설이 건설 부 고시 제 539 호 ( 72. 12. 23 ) 로

결정 고시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12 제 5 항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제 1 항 제 1 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및 동대문구청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
1973. 1. 24

서울특별시 장

가. 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			
지 역 별	면 적 (㎡)		
	기 정	변 경	변 경 후
주거지역	325,581,032	(감) 23,800	325,557,232
상업지역	17,110,204	(증) 23,800	17,134,004
공업지역	47,059,500		47,059,500
녹지지역	331,125,264		331,125,264
계	720,876,000		720,876,000

나. 중앙도매시장 결정조서

구 분	시 설 명	위 치	면 적 (㎡)
신 설	중앙도매시장	동대문구용두동 39	16,500

※ 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

도면은 서울시청 도시계획과 및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보관.

◎ 건설부고시 (서울) 제 2 호

도시계획용도지역일부변경및  
중앙도매시장시설 지적승인

1. 중앙도매시장 시설 결정에 따른  
지적승인을 도시계획법 제 13 조의  
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 
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에 비치하  
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 
보이고 있습니다.

1973. 1. 24.

건설부장관



가. 중앙도매시장 결정 (조서)			
지번	지적(평)	지목	비고
동대문구 용두동 39-1	984	대	
" " 39-44	728	"	
" " 39-45	475.70	"	
" " 39-46	522.70	"	
" " 39-47	588.70	"	
" " 39-48	467.70	"	
" " 39-49	57.30	"	
" " 39-50	299.30	"	
" " 39-51	301.60	"	
" " 39-52	288.10	"	
" " 39-53	287.70	"	
계	5,000.80		

별첨: 도면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

도면은 서울시청 및 관할구청에 보관.

○서울특별시공고제 10 호

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 허가명의 변경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49 호 (기. 6. 25) 로 허가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의 시행자를 도시계획법

제 24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6 조 제

1 항 제 4 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허가 하였기 공고한다.

1973. 1. 26.

서울특별시장

1. 사업집행지 : 서울특별시영등포구봉천  
동산 103-1 호의 3 필지

2. 사업의종류 :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 
명칭 : 국회도서관주택단지

3. 사업시행자의 주소, 성명  
당초 : 국회도서관사서국장 김 중 고  
변경 : 국회도서관 주택조합  
조합장 박 보 섭

4. 사업의 착수 및 준공년월일  
착수일자 : 71. 9. 2.  
준공일자 : 73. 5. 30.

5. 기 타 사 항  
가, 본 사업집행에 관한 제반 인가  
조건 및 지시사항의 의무이행을  
승계한다.

◎ 서울 특별 시공 고 제 11 호

지하고속철도 제 1호선부대시설변경

1. 당시 관내 지하고속철도 제 1 호  
선 부대시설이 건설부고시 제 535호  
(72. 12. 23)로 변경결정 고시  
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12조제 5 항  
및 동법시행령 제 6조제 1 항제 1 호  
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 
공고한다.

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 
도시계획과, 지하철건설본부 및 관할  
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  
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  
습니다.

1973. 1. 26.

서울 특별 시 장

가. 지하고속철도 제 1호선 부대시설 변경 지정조서

구분	번호	부대 시설명	위	치	폭(㉾)	연장	면적(㉾)	비고
기정	1	서울역정류장	서울역	광장	22.8	220	5,016	
변경	1	서울역정류장	서울역	광장	18.0	210	3,600	
기정	6	동대문정류장	종로 6 가 78-25-창신동 552 앞		22.8	220	5,016	
변경	6	동대문정류장	창 신 동		18.0	210	3,600	
기정	8	계기동정류장	계기동 51-계기동 36-12		22.8	220	5,016	
변경	8	계기동정류장	용두동 및 계기동		18.0	210	3,600	
기정	9	청량리정류장	청량리	광장	22.8	220	5,016	
변경	9	청량리정류장	청량리	광장	18.0	210	3,600	

별첨도면 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  
도면은 서울시청 도시계획과, 지하철건설본부,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보관.

○ 건설부 (서울) 고시 제 1 호

지하고속철도 제 1 호선  
부대시설지적승인고시

1. 지하고속철도 제 1 호선 부대시설  
건설에 따라 지적승인을 도시계획  
법 제 13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 
과 같이 고시한다.

관계도서를 서울특별시에 비치하

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이게  
한다.

1973. 1. 26.

건설부장관  
가. 지하고속철도 제 1 호선 부대시설  
지적승인조서 : 별첨.  
별첨도면 크기와 같음.  
도면은 서울시청에 보관.

지하고속철도 제 1 호선 부대시설지적승인조서

번호	부대시설명	위 치	폭 (m)	연장(m)	면적(m <sup>2</sup> )	비 고
1	서울정류장	서울역광장	18.0	210	3,600	
6	동대문정류장	창 신 동	18.0	210	3,600	
8	계기동정류장	용두동및계기동	18.0	210	3,600	
9	청량리정류장	청량리광장	18.0	210	3,600	

사 령

○ 1973. 1. 24

종로구 지방행정주사보 김응원  
중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.

경북 지방행정서기 윤종식  
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.  
지방행정서기에 임함.

5 호봉을 급함.  
종로구 근무를 명함.

김기수

시보근무를 명함. (73. 1. 1-  
73. 2. 28 )

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. (73. 3.  
1자)

3 호봉을 급함.  
시정개발담당관실 제 5 개발담당에 포함.

대 방부녀 지방 행정 주사 국규 황  
보호지도소 인사과 근무를 명함.

영등포구 지방 행정 주사 신석관  
대방부녀보호지도소 근무를 명함.

서대문구 지방 행정 주사 박찬황  
죽지과 파견 (어린이대공원 근무요원)  
근무를 명함.

◎ 1973. 1. 25.

최승용

지방행정 사무관에 임함.  
3 호봉을 급함.  
통제과 통계조사 계장에 포함.

◎ 1973. 1. 26.

노량진수원 지방 행정 주사 장석구  
지 사무소 성동구 근무를 명함.

동대문구 지방 행정 주사 최성기  
노량진수원 지 사무소 근무를 명함.

구획정리 지방 행정 주사보 변영일  
제 1 과 총무과 근무를 명함.

서울특별시